

<붙임 1>

정관 중요사항의 변경 보고

※ 법 제418조제2호에 따른 정관 중요사항 변경시 작성한다.

1. 정관변경사유
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변경

2. 주요 변경내용

제46조의2(이사회의 권한) 신설

■ 첨부서류

1. 신구조문대비표 및 정관 각 1부
2.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

신구조문대비표

* 정관 제46조의2(이사회의 권한)

변경 전	변경 후
<신설>	<p>제 46 조의 2(이사회의 권한) <신설 2025.06.10.></p> <p>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2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3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4. 해산·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5. 내부통제기준 및 리스크관리기준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5 의 2.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6.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7. 대주주·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8. 관계 법령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는 사항9. 기타 중요한 사항으로 이사회가 정하는 사항10.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<p>② 제 1 항 이외 이사회의 심의·의결 사항은 이사회규정에서 정한다.</p> <p>③ 이사회는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지배구조법”) 제30조의4에 따른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을 감독한다.</p>